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9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
시설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

발 의 자 : 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1. 제안이유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책무 (안 제3조)
- 다. 비용의 지원 (안 제4조)
- 라. 보고·점검 (안 제5조)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5조(보고·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